

##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2309 상품요약서

###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특약의 보험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 해야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위임)해야 합니다.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1) 가입자격제한

### ① 가입나이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3/5/10년	전기납	18세~80세	월납 연납
	화재손해(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 례보상)					
화재배상책임(500m <sup>2</sup> 이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 약관	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8세~60세				
일반상해화상진단	18세~80세				
일반상해화상수술					

화재상해추상장해				
중증화상및부식진단			18세~70세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깁스치료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				
가족화재벌금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자가용)				
일상생활배상책임	3/5년	전기납	18세~80세	월납 연납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최 5년	전기납	18세~80세	월납

	초			23세~85세	연납
	갱신	5년			
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년	전기납	18세~80세	월납 연납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최초	3년	전기납	18세~80세	월납 연납
	갱신	3년		21세~86세	
	갱신	2년		21세~83세	
	갱신	1년		27세~89세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에서,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최초가입 보험기간(3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용이율 : 2.50%(연복리, 확정이율)
- 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담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화재손해(실손보상), 붕괴침강및 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 가재),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 물,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 건물),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화 재배상책임(500m <sup>2</sup> 이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단지내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 도),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 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일반상해화상 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일반상해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 술, 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화재상해추 상장해, 중증화상및부식진단,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김스치료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운전중교통상 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대중교통이용 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 0%)(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신주 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 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 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 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 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 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 (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 (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물)(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운전중 보복운전피해보상(자가용), 가족화재별금,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 가용),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자가용)	3/5/10년	3/5/10년	월납 연납
일상생활배상책임	3/5년	3/5년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5년	5년	
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년	3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년	3년	

③ 만기환급금

- 1종: 기본계약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
- 2종: 기본계약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0%
- ④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⑤ 응급실내원비(응급) 담보는 아래 담보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⑥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⑦ 보험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 ⑧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특수건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⑨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⑩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 ⑪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 ⑫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⑭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특별약관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⑮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및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⑯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특별약관 및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⑰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주계약 보험기간 10년 만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주계약 보험기간 3년 및 5년 만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⑱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은 주계약 보험기간 5년 만기 및 10년 만기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은 주계약 보험기간 3년 만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⑲ 도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및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은 보험목적일 일반가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⑳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매 5년 단위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㉑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은 매 3년 단위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㉒ 안전한우리집 할인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건물) 내에 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배치)되었음을 회사에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부터 다.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을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1개 설치(배치)	2개 설치(배치)	3개 설치(배치)	4개이상 설치(배치)
안전한우리집 할인을	2%	3%	4%	5%

나.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

- 소화기
- 스프링클러
- 화재감지기
- 인덕션 또는 하이라이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가스누출감지기 및 가스자동차단기

다. 안전한우리집할인을 적용대상 특별약관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라. 세부사항

- 보험기간 내에 보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된 보험목적 내에 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배치)되었음을 회사에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부터 다.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율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차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㉔ 당사 기가입자 보험료 할인

가. 할인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당사 장기보험/자동차보험/일반보험(1년미만 단체 또는 제휴보험 제외)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다만, 계약체결당시 유효한 계약에 한함)

나. 할인금액 및 할인적용방법

계약체결시점에 할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초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의 3% 할인을 적용함.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기본 계약	만기환급금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 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1종: 보험가입금액 × 1% 2종: 보험가입금액 × 0%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선택 계약	화재손해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 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아래 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 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 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위 제1 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액이 보험 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붕괴침강 및사태손해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붕괴 <sup>주3)</sup> , 침강 <sup>주4)</sup> 및 사태 <sup>주5)</sup> 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도난손해 (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주택내 <sup>주6)</sup> 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목적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 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수조, 급배수설비 <sup>주7)</sup>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재 지건물 내 보험목적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지진손해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sup>주8)</sup> 보장 1. 화재 및 그 연소 피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문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 치로 인한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손해액 - 100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손해액 - 100만원) ×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전기손해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손해액 - 5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및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sup>주9)</sup> 보장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80%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80%	$(\text{손해액} - 5\text{만원})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입금액의 } 80\%}$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위험으로 인해 보험목적인 특수건물 <sup>주10)</sup>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인 6대가전제품에 고장 <sup>주11)</sup> 이 발생하여 수리 <sup>주12)</sup> 를 한 경우 보장 ※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연 100만원 한도 보상 ※ 6대가전제품 <sup>주13)</sup>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고장수리비 중 최저금액 - 2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sup>주14)</sup>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인 12대가전제품에 고장 <sup>주11)</sup> 이 발생하여 수리 <sup>주12)</sup> 를 한 경우 보장 ※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연 100만원 한도 보상 ※ 12대가전제품 <sup>주13)</sup>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고장수리비 중 최저금액 - 2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sup>주14)</sup>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특수건물 <sup>주10)</sup> 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보장	손해액 (단,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신체손해배상책임의 후유장애등급별 지급보험금표」상의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특수건물 <sup>주10)</sup> 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보장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 한도)	
	임차자 (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비례보상)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장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frac{\text{손해액} \times \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화재배상책임 (500m <sup>2</sup> 이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장	대인사고 사망	손해액 (단,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범위 내이며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대인사고 부상	손해액 (단, 피해자 1인당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상의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대인사고 후유장해	손해액 (단, 「신체손해배상책임의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표」상의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재산상의 손해	손해액 (단,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아래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 보상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하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20만원)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보험기간3/5년(주계약 보험기간3/5년만 설정 가능)	
	(갱신형) 일상생활 배상책임	<p>보험기간 중 아래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 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하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li> <li>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li> </ol> <p>※보험기간5년(주계약 보험기간10년만 설정 가능)</p>	<p>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20만원)</p>
	붕괴침강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p>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sup>주15)</sup>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p> <p>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sup>주15)</sup>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p>	<p>보험가입금액</p> <p>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sup>주2)</sup></p>
	단지내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p>보험기간 중 단지내<sup>주16)</sup>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p> <p>보험기간 중 단지내<sup>주16)</sup>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p>	<p>보험가입금액</p> <p>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sup>주2)</sup></p>
	추락사고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p>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sup>주17)</sup>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p> <p>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sup>주17)</sup>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p>	<p>보험가입금액</p> <p>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sup>주2)</sup></p>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	<p>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p>	<p>(1일당) 보험가입금액</p>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한도)		
	일반상해종합 병원입원일당(1 일이상180일한 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 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간병인 <sup>주18)</sup> 지원 입원일당(1일이 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단,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전액 또는 간병인 지원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또는 간병인지원
	(갱신형)상해간 병인 <sup>주18)</sup> 지원입원일당(1 일이상180일한 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단,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전액 또는 간병인 지원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또는 간병인지원
	일반상해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 장 (단, 치아파절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 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 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도 보장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응급 실내원비 (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도 보장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sup>주19)</sup>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장 (단, 복합골절 발생시 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골절 <sup>주19)</sup>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sup>주20)</sup> ,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최고 500만원 한도로 지급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뇌,내장손상)	보험기간 중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중대한 특정상해(뇌, 내장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 뇌손상: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뇌에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 정한 내장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 수술 또는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일반상해 화상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 추상장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재상해 <sup>주21)</sup> 로 후유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장	외모(얼굴, 머리 및 목부분)	보험가입금액 x 2 x 후유장애지급률 <sup>주2)</sup>
			그 외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애지급률 <sup>주2)</sup>
			※ 단,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중증화상 및부식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중증화상 및 부식 <sup>주22)</sup>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1,000만원(최초 1회한)	
	일상생활 강력범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 <sup>주23)</sup> 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발생	생한 경우 보장(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 사고부상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5만원 ~ 500만원
	자동차 사고부상 (1~11급)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10만원 ~ 500만원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체증형,5년간 매월지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사망 (체증형, 5년간매월지급)(자가용) <sup>주1)</sup> X 60회
	운전중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체증형,5년간 매월지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체증형, 5년간매월지급)(자가용) <sup>주1)</sup> X 60회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sup>주24)</sup> 이용하던 중에 <sup>주25)</sup>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3~100%) (자가용)	상태가 된 경우 보장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sup>주2)</sup>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 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 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 ) (자가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 <sup>주26)</sup> 에 교통상해의 직 접결과로서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 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 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3,000만원 한도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 일	1,000만원 한도
				70일~139 일	2,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3,000만원 한도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 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5,000만원 한도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 일	1,000만원 한도
				70일~139 일	3,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5,000만원 한도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 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7,000만원 한도	
			피해자 42일 이상	42일~69 일	1,000만원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외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70일~139 일 140일 이상	4,000만원 한도 7,000만원 한도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IV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 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1억원 한도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 일 70일~139 일 140일 이상	1,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1억원 한도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V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 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2억원 한도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 일 70일~139 일 140일~17 4일 175일 이상	2,000만원 한도 8,000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 5,000만원 한도
	운전중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6주 미만)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 위반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 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이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1사고당) 21일 미만 진단 시 : 150만원 한도, 21~41일 진단 시 : 500만원 한도		
	운전중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1사고당)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 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6주 미만)(자가용)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 외)이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 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21일 미만 진단 시 : 150만원 한도, 21~41일 진단 시 : 1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3천 만원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2천 만원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 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 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2천 만원한도)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2천 만원초과,1천만 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 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 벌금(대물)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 외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변호사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선임비용 (자가용)	<p>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p> <p>※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li> <li>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li> </ol>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 조사포함)(자가 용)	<p>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p> <p>※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 사망시</li> <li>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li> </ol>	피해자 사망시	5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 약식명령으 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부상등급 1-3급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4-14급 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부상등급 1-3급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4-7급 3천만원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또는 불기소된 경우	부상등급 8-14급	5백만원 한도
	운전중보복운 전 피해보장(자가 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 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 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 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보험가입금액		
	가족화재별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 <sup>주2)</sup> 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 (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 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70조 (실화)에 의한 벌금	1사고당 벌금액 (단,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 화)에 의한 벌금	1사고당 벌금액 (단, 2,000만원 한도)	

주2)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은 3~100%임

주3)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함

주4)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주5)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土沙)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6) 주택 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주7)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

주8) 단, 1사고란 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를 기준으로 함

- 주9) 단,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주10)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을 의미함
- 주11) 고장이란, 해당제품이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함
- 주12) 수리란,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함
- 주13)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된 주택에서 거주하며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함
- 주14) 단,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주15) 붕괴침강및사태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함
- 주16) 단지내라 함은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구역 내를 말함.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명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대지를 경계로 하여 그 안쪽을 말함
- 주17) 추락사고상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중 낙상(W00~W19)을 말함. 다만, 익사사고를 동반한 추락사고는 추락사고로 보지 않음
- 주18)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함.
- 주19) 5대골절이란 제8차 개정 한국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함  
①머리의 으깬손상 ②목의 골절 ③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④요추 및 골반의 골절 ⑤대퇴골의 골절
- 주20) 안면부는 이마 포함 목까지 얼굴부분, 상지는 견관절 이하 팔부분, 하지는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를 말함
- 주21)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 폭발, 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단, 제2항의 화재상해 중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주22)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함.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
- 주23) 강력범죄는 형법 제24, 25, 32, 38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상해와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를 말함

주24) 대중교통이란 아래와 같음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주2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아래와 같음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운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주26)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주27)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함(단,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함)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④ 이 상품의 「화재손해(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500㎡이하)」, 「일상생활배상책임」,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대물)(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가족화재별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산출기초

####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3) 적용위험률

###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기준)

담 보 위 험		적용위험률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사망률	0.0000060
	후유장해발생률 (3~100%)	0.0000042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4.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방식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시행세칙 I. 장기손해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6.보험가격지수 비교·공시" 준용)

#####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아파트, 건물급수 1급, 월납, 보험기간 10년, 전기납

필수가입담보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가입금액 1억원,

필수가입담보 외 : 화재손해(실손보상,건물) 및 화재손해(실손보상,가재) 보험가입금액 1억원]

#### [1종 만기환급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10.5%	110.6%

**[2종 순수보장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15.7%	115.9%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

- 남자, 40세, 상해1급, 아파트, 건물급수1급, 특수건물, 자가, 거주, 지진등급 Zone1, 내진등급 없음, 주택면적 100m<sup>2</sup>,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월납
- 기본계약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1억원
- 선택계약 : 화재손해(실손보상) 건물 2억원/가재 2,000만원,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건물 2억원/가재 2,000만원, 도난손해(일반가재) 100만원,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500만원, 지진손해(비례보상) 건물 2억원/가재 2,000만원, 전기손해(비례보상) 100만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00만원,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10억원,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3~100%) 1억원,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 1억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만원, 일반상해골절수술 5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0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 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 50만원,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원, 가족화재별금 2,000만원

**[1종 만기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88,120	52,020	18.1%

3년	864,360	249,700	28.9%
5년	1,440,600	456,760	31.7%
7년	2,016,840	675,270	33.5%
10년	2,881,200	1,000,000	34.7%

**[2종 순수보장형]**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58,040	-	0.0%
3년	474,120	-	0.0%
5년	790,200	-	0.0%
7년	1,106,280	1,600	0.1%
10년	1,580,400	-	0.0%

주)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2309의 안전한우리집 할인을 신청한 경우, 실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안전한우리집 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위의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